| 법무부 | 보 도 자 료 |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<br>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|
|---|---|---|

| 보도일시 | 배포 즉시 보도 | 총 3 쪽 / 사진 없음 | |
|---|---|---|---|
| 배포일시 | 2022. 3. 29.(화) | 담당부서 | 법무부 체류관리과 |
| 담당과장 | 체류관리과장 이승현(02-2110-4057) | 담 당 자 | 사무관 최준호(02-2110-4065) |

# 법무부, 어업계의 일손 부족 지원 방안 시행

## - 올해 4. 1. ~ 12. 31.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어선원(E-10)의 체류기간을 1년 더 연장합니다. -

○ 법무부(장관 박범계)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**올해 4. 1. ~ 12. 31. 사이**에 **취업활동 기간**이 **만료되는 외국인 어선원**의 **체류 기간을 직권으로 1년 일괄 연장**합니다.

○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외국인의 입출국 애로사항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**(대상) 국내 합법 체류** 중인 **어선원(E-10-2)** 자격의 외국인 선원으로서 **'22. 4. 1. ~ 12. 31.** 사이 취업활동 기간(4년 10개월) 만료되는 사람

  ※ 근무처를 변경 중이거나, 이미 취업활동 기간 50일을 연장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

- **(내용)** 대상자는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를 **방문*할 필요 없이** 체류기간을 만료일로부터 **1년간** 일괄 연장받게 되며, 수수료는 **면제됩니다.**

* 전산으로 일괄 연장됨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에 허가 기간을 기재하지 않으며, 연장 결과는 4. 1.부터 인터넷 홈페이지(www.hikorea.go.kr)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
○ 이번 조치로 체류기간이 일괄 연장되는 외국인 어선원의 규모는 **약 950명**으로 어선원 수급 불안에 따른 임금 상승, 인력 빼가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○ 한편, 어업 분야에서 4년 10개월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선원은 현행 규정 상 출국 후 3개월이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하였으나, 어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재입국 취업 제한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여 어가에서 신속히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.

○ 앞으로도 법무부는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근로자가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.

**[붙임] 관련 통계 1부.**

**붙임** **관련 통계**

## ○ 선원취업(E-10) 외국인 근로자 국내 체류 현황

(법무부 체류관리과, 기준: '22. 2. 28. 단위: 명)

| 내항선원 (E-10-1) | 어선원 (E-10-2) | 순항여객선원 (E-10-3) | 소 계 |
|---|---|---|---|
| 1,015 | **17,412** | 17 | **18,444** |

## ○ 어선원(E-10-2) 신규 입국자 연도별 현황

(단위: 명)

| 구 분 | 2018 | 2019 | 2020 | 2021 |
|---|---|---|---|---|
| 어선원 (E-10-2) | 3,413 | 2,555 | 1,922 | 2,166 |